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8, 2023. 4. 25. 공포, 2023. 8. 26. 시행) 됨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사항, 주변개발 예정지역의 지정, 신공항 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 민간자본 유치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안 제2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의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함.

나.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안 제3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규정함.

다.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안 제4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라. 이주정착지원금 등(안 제5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 또한 그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을 별표1로 정하고, 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마.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

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

바.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통합신공항건설사업추진단의 구성(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과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사.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등(안 제8조)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해 규정함.

아. 개발계획의 수립(안 제9조)

개발계획의 고시 범위와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함을 규정함.

자.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안 제10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고시는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 정부의 재정 지원(안 제11조)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또한, 사업

시행자의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함.

카.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안 제12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타. 지역기업의 우대(안 제13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의 내용과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음.

파.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14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함.

하. 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과징금의 부과기준 (안 제15조, 제1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 고시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5. 00. ~ 2023.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포함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제5조(이주정착지원금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역 지

정의 효력,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 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개량 사업

2.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업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2.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4.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5.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6. 통합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7. 통합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
8. 통합신공항건설예정지역 조성·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
9.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1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협조
11. 그 밖에 통합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기구(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협의기구(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개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 2. 종전부지의 위치 및 면적
-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시

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5. 개략설계도서
6. 계획평면도
7. 자원조달계획서
8.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9.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1.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1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② 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11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이하 “초과사업비”라 한다)할 경우 지원에 필요한 자료조사, 분석 및 업무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초과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국방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2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

품·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 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5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종 류	대 상 자	지 원 금
이 주 정 착 지원금	2023년 1월 12일 이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예정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자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 입자	지원금 : 세대당 1천5백만원
생 활 안 정 지원금	이주정착지원금의 대상자와 동일	지원금 : 1인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 고

1.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4조에 따른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을 말한다.
2. 사업예정지역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을 말한다.
3. 대상자의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전에 상속 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현 거주자는 전 거주자의 거주시점부터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가. 법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2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한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한다.
나. 법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3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여 시행한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한다.

비 고: 공사 금액은 설계도서에 적힌 공사 금액으로 하되, 설계도서가 없거나 설계도서에 공사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검사 (앞쪽)

기관명(영문)	검사공무원증 (Inspector's Certificate)
사 진 3.5cm × 4.5cm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 된 상반신 컬러사진)	증명서 번호(Certi. No.):
	구 분(Occupation) :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년(y) 월(m) 일(d)
	소 속(Employed by) :
	유효기간(Date of Expiry): 년(y) 월(m) 일(d)까지
	서명(Signature of Holder):

85mm × 55mm [백상지 (120g/㎡)]

(뒤쪽)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사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a public official who has an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32(1) of the Special Act for the Construction of DaeguGyeongbuk New Airport, to order project implementers to file any report or submit any materials deemed necessary for relevant affairs. This person is also duly authorized to access offices of project implementers or any such places as may be necessary to perform inspections on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발행번호(Issued No.) : 발 행 일(Issued date): 발행장소(Issued at) :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중전부지 개발사업의 검사 (앞쪽)

지방자치단체명(영문)	검사공무원증 (Inspector's Certificate)
사 진 3.5cm × 4.5cm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증명서 번호(Certi. No.):
	구 분(Occupation) :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년(y) 월(m) 일(d)
	소 속(Employed by) :
	유효기간(Date of Expiry): 년(y) 월(m) 일(d)까지
	서명(Signature of Holder):

85mm × 55mm [백상지 (120g/㎡)]

(뒤쪽)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이 사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중전부지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중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a public official who has an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32(2) of the Special Act for the Construction of Previous Site Airport, to order project implementers to file any report or submit any materials deemed necessary for relevant affairs. This person is also duly authorized to access offices of project implementers or any such places as may be necessary to perform inspections on K-2 site redevelopment projects.	
발행번호(Issued No.) : 발 행 일(Issued date): 발행장소(Issued at) :	대구광역시장 직인 (DAEGU METROPOLITAN CITY)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329